1. 개정이유

제 3차 아시아 ·유럽 정상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아시아 ·유럽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정상회의 준비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기관간의 협조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실 ·국장과 기획단의 각 본부장으로 구성되는 실무조정회의를 설치 ·운영하도록 함(안 제2조의 2).

나. 회의준비본부와 하부조직인 총무부를 회의지원부로 개칭하고, 그 분장업무를 일부 조정함(안 제4조).

다. 사업추진본부의 하부조직인 사업총괄부 ·사업개발부 및 건설지원부를 사업총괄부 및 사업지원부로 통 ·폐합함(안 제5조)

라.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(1급 1인, 2급 또는 3급 1인, 4급 2인, 6급 또는 7급 3인 및 기능직 1인 각각 감축, 특 2급 1인 신설, 5급 7인 증원)함 (안 별표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 ·구조문대비표 및 신 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국무총리 훈령 제383호

'아시아 ·유럽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

아시아 ·유럽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부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차관 및 외교통상부차관의 순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 2 (실무조정회의) ① 단장밑에 아시아 ·유럽정상회의 (이하 "정상회의"라 한다)의 준비와 관계되는 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.

② 실무조정회의는 정상회의의 준비와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실장 ·국장 및 기획단의 각 본부장으로 구성하며, 외교통상부차관이 이를 소집 ·운영한다.

제3조 제1항 중 "외교직 1급"을 "외교적 특 2급 또는 1급"으로 하고, "재정경제원"을 "재정경제부"로 한다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 (회의준비본부) ① 회의준비본부에 기획총괄부 및 회의지원부를 두되, 기획총괄부장은 2급 또는 3급 외교직공무원중에서, 회의지원부장은 2급 또는 3중 외교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겸임 또는 파견된 자로 한다.

② 기획총괄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준비업무의 총괄·조정
2. 아시아 ·유럽 정상회의 준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의 총괄
3. 정상회의 준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
4.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행정사항의 총괄
5. 실무조정회의의 운영

③ 회의지원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인력확보계획의 수립 및 운영
2. 정상회의 관련 대내외 홍보
3. 미디어센터운영 및 보도지원
4. 기획단의 예산편성 ·운영, 물품관리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5조(사업추진본부) ① 사업추진본부에 사업총괄부 및 사업지원부를 두되, 각 부장은 관련부처의 2급 또는 3급 외교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겸임 또는 파견된 자로 한다.

② 사업총괄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재원조달 및 민자유치에 관한

기본계획의 수립 ·조정

2. 국제회의장(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부대시설 ·설비를 포함한다.이하 같다) 및 지원시설의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

3. 정상회의 관련행사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·조정

4. 국제회의장 및 지원시설의 건립과 관계되는 행정기관 ·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

5. 정상회의관련 각종 부대행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·조정

③ 사업지원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국제회의장 및 지원시설에 관한 건설계획의 수립

2. 지원시설의 건설에 관한 타당성조사 및 부지선정에 관한 사항

3. 건설계획에 따른 건설공사의 점검 ·관리에 관한 사항

4. 국제회의장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
5. 국제회의장에 필요한 설비 ·장비 ·물품 및 용역의 확보

6. 정상회의관련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

제13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아시아·유럽정상회의준비기획단공무원정원표(제13조관련)

총 계	36
외교직 계	2
외교직 특2급 또는 외교직 1급	1
외교직 2급 또는 외교직 3급	1
일반직 계	30
1급	1
2급·외교직 2급·3급 또는 외교직 3급	3
4급 또는 외교직 4급	8
5급·특정직(5급) 또는 별정직(5급 상당)	16
6급 또는 7급	2
기능직	4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단장·부단장) ① (생 략)	제2조(단장·부단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부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직무------ ----------재정경제부차관 및 외교통상부차관의 순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신 설>	제2조의2(실무조정회의) ①단장밑에 아시아·유럽정상회의(이하 "정상회의"라 한다)의 준비와 관계되는 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. ②실무조정회의는 정상회의의 준비와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실장·국장 및 기획단의 각 본부장으로 구성하며, 외교통상부차관이 이를 소집·운영한다.

제3조(하부조직) ①기획단의 회의 준비본부장은 외교직 1급 공무원중에서, 사업추진본부장은 재정경제원 소속 1급 공무원중에서 파견된 자로 보한다.	제3조(하부조직) ①----------외교직 특2급 또는 1급 ---------- 재정경제부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회의준비본부) ①회의준비본부에 기획총괄부 및 총무부를 두되, 기획총괄부장은 2급 또는 3급 외교직 공무원중에서, 총무부장은 2급 또는 3급 외교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겸임한다.	제4조(회의준비본부) ①회의준비본부에 기획총괄부 및 회의지원부를 두되, 기획총괄부장은 2급 또는 3급 외교직공무원중에서, 회의지원부장은 2급 또는 3급 외교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겸임 또는 파견된 자로 한다.
②기획총괄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기획총괄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21세기 아시아·유럽간 협력 전략의 개발	1.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준비업무의 총괄·조정
2. 아시아·유럽정상회의(이하 "정상회의"라 한다) 개최준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	2. 아시아·유럽정상회의준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

준비업무의 총괄·조정	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의 총괄
3. 아시아·유럽정상회의 준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부의할 회의안건의 총괄	3. 정상회의 준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
4. 정상회의 준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	4.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행정사항의 총괄
5.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대외교섭 지원	5. 실무조정회의의 운영
③총무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회의지원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정상회의 개최 및 전략개발과 관련된 인력확보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	1.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인력확보계획의 수립 및 운영
2.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된 의전 및 안전·경호관련 계획의 수립	2. 정상회의관련 대내외 홍보
3.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된 대내외 홍보 및 보도의 지원	3. 미디어센터운영 및 보도지원
4. 기획단의 예산편성 및 운영과 물품 및 기타 서무	4. 기획단의 예산편성·운영, 물품관리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

제5조(사업추진본부) ①사업추진본부에 사업총괄부, 사업개발부 및 건설지원부를 두되, 각 부장은 관련부처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겸임한다.	제5조(사업추진본부) ①사업추진본부에 사업총괄부 및 사업지원부를 두되, 각 부장은 관련부처의 2급 또는 3급 외교직이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겸임 또는 파견된 자로 한다.
②사업총괄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사업총괄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정상회의개최와 관련된 재원조달 및 민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	1.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재원조달 및 민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
2. 국제회의장(정상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기타 호텔 등 지원시설(이하 "지원시설"이라 한다)의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	2. 국제회의장(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부대시설·설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지원시설의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
3. 정상회의 관련행사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	3. 정상회의 관련행사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
4. 국제회의장 및 지원시설 건립	4. 국제회의장 및 지원시설의 건립과 관계되는 행정기관·지방

과 관련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	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
③사업개발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5. 정상회의관련 각종 부대행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
1. 21세기 아시아·유럽간 경제협력 확대전략의 개발	③사업지원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2.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사업지원	1. 국제회의장 및 지원시설에 관한 건설계획의 수립
3. 정상회의 부대사업 및 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조정	2. 지원시설의 건설에 관한 타당성조사 및 부지선정에 관한 사항
④건설지원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3. 건설계획에 따른 건설공사의 점검·관리에 관한 사항
1. 국제회의장 및 지원시설에 관한 건설계획의 수립	4. 국제회의장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2. 지원시설의 건설에 관한 타당성조사 및 부지선정에 관한 사항	5. 국제회의장에 필요한 설비·장비·물품 및 용역의 확보
3. 건설계획에 따른 건설공사의 점검·관리에 관한 사항	6. 정상회의관련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
제13조(정원) ① (생 략)	제13조(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기획단의 정원은 정상회의 개최 준비의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충원할 수 있다.	<삭 제>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 표]

아시아·유럽정상회의준비기획단공무원정원표(제13조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36	36	
외교직 계	2	2	
외교직 특2급 또는 외교직 1급	〈신 설〉	1	+1
외교직 1급	1	〈삭 제〉	-1
외교직 2급 또는 외교직 3급	1	1	
일반직 계	29	30	+1
1급	1	1	
2급·외교직 2급·3급 또는 외교직 3급	4	3	-1
4급 또는 외교직 4급	10	8	-2
5급·특정직(5급) 또는 별정직(5급 상당)	9	16	+7
6급 또는 7급	5	2	-3
기능직	5	4	-1